

---

#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

##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운영지침」의 유효기간(2012.5.31)이 도래되어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반영하고,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알기쉬운법령 만들기」 사업에 맞게 훈령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알기쉬운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국민 누구나 훈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
- 나. 차량의 정밀진단 및 사용내구연한 연장차량 안전진단 실시(제42조)
- 철도안전법 개정(10.9.16)에 따라 차량의 정밀진단 신청시기와 사용내구연장기간(5년→15년) 및 연장차량 안전진단 실시 반영
- 다. 차량의 화재예방을 위한 차체 및 실내설비 기준(제44조)

- 산업표준화법 및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개정(11.3.3)에 따라 차체구조 및 차량실내·외 설비의 화재안전 시험방법 등 개정내용 반영

###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2조 및 항공법시행령 제10조의제1호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의견수렴 : 완료('12.2.21~4.10)
- 라. 사전협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문심사 완료('12.3.29)
- 마. 기 타 : (1) 행정예고 - 2012.4.27~5.7  
(2) 규제심사
  - 국토해양부 규제개선감시위원회 교통해양분과  
의견수렴 : 2012.5.9~5.11(민간위원 12명)
  - 총리실 규제심사 완료 : 2012.5.15~5.29(3)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개정 계획 - 훈령번호 채번 및 우리 부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련법에서”를 “관련법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지지대”를 “버팀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수용하는”을 “받아들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본선을”을 “본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이라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운행중”을 “운행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의 “”유지보수책임자(이하 “보수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유지보수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유지보수자를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한다”를 “”관제책임자”란 관제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 제19호의 “”관제책임자”라 함은 관제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자를 말한다.”를 “”유지보수책임자(이하 “보수책임자”라 한다)”란 유지보수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유지보수자를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며, 제20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각 목 외의 부분 중 “목의 1”을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 목, 나 목, 다 목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국내관련법령”을 “국내 관련 법령”으로 하고, “해당법령”을 “해당 법령”으로 하며,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을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조 중 “이지침”을 “이 지침”으로 한다.

제5조 중 “관제자자격”을 “관제자 자격”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제자으로써”를 “관제자로서”로 한다.

제6조 중 “1인이상”을 “1인 이상”으로 하고, “지정 임명”을 “지정·임명”으로 한다.

제7조 중 “유지보수지시”를 “유지보수 지시”로 하고, “지시할 수 있다”를 “지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열차운행중지건의”를 “열차 운행중지 건의”로, “관제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에게”를 “관제책임자에게”로 하고, “열차운행중지”를 “열차 운행중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근무중”을 “근무 중”으로 하고, “3년동안”을 “3년 동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간시설운영현황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연간시설운영현황을 당해연도 종료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상시”를 “항상”으로 하고, “근무자이외의”을 “근무자 이외의”로 하며, “시에”를 “때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량기지내”를 “차량기지 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상시”를 “항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통보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4조 중 “차량기지내에서는”을 “차량기지 내에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량기지내의”를 “차량기지 내의”로 하며, “시킬 때에는”을 “시킬 때에”으로 한다.

제15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16조 중 “관리자”를 “총괄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중 “열차운행등과”를 “열차운행 등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버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킬 것

제20조 중 “상시”를 “항상”으로 한다.

제25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26조 중 “아니되며, 고정지지대에 견고히 체결되어야”를 “아니 되며, 고정버팀대를 견고하게 부착시켜야”로 한다.

제28조 중 “체결부위”를 “부착 부위”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신설구간등의 시운전)”을 “(신설구간등의 시험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시운전”을 “시험운전”으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유지보수책임자”를 “보수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히 필요한”으로 한다.

제33조제5호 중 “수선”을 “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초과하여”를 “초과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운전하여”를 “운전해”로,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통제실장”을 “관제책임자”로 한다.

제37조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4조”를 “제110조”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영하거나 또는 성능시험”을 “운영하

거나 성능시험“으로 하고, 변경하는”을 “변경할”로 하며, “규격등에”를 “규격 등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자로서”를 “자로”로 한다.

제40조 중 “시운전”을 “시험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시운전”을 “시험운전”으로 하고, “상이점”을 “다른 점”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시운전”을 “시험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때에는”으로, “적합여부를 통보받아야”를 “적합 여부를 통지받아야”로 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날로부터 하며, 운영자 등은 차량의 내구연한 만료일 6월 전까지 정밀진단기관(이하 “정밀진단자”라 한다)에 정밀진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자의 정밀진단결과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차량의 사용내구연한 연장 기간은 해당 차량의 사용 내구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5년의 범위에서 정밀진단자가 인정하는 기간

까지로 한다. 이 경우 운영자 등은 사용내구연한이 5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차량은 철도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자로서”를 “자로”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정한 시험방법 ISO 1182에 의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에프 아이에스오(KS F ISO) 1182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방법 ISO 4589-2에 의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엠 아이에스오(KS M ISO) 4589-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내설비 중 내장판·의자·바닥재 및 단열재”를 “차체 중 차체구조 및 외장재와 실내설비 중 내장판, 의자, 통로연결막, 바닥재 및 단열재”로, “차량실내설비”를 “차체구조 및 차량실내·외설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화재예방기준 개정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제작 시점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4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방법 ISO 4589-2에 의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엠 아이에스오(KS M ISO) 4589-2에 따라”로,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제적”을 “국제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연기검지기”를 “연기감지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구조이어야”를 “구조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연감지기”를 “연기감지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상시”를 “항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5kg이상 이어야”를 “2.5kg이상이어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른 전기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구비하여야 하며 당해”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으로, “오조작”을 “잘못된 조작의”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구조이어야”를 “구조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구비하여야”를 “갖추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시건장치”를 “잠금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비하여야”를 “갖추어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강도”를 “세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낮게”를 “작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결합여부”를 “결합 여부”로, “구조이어야”를 “구조여야”로 한다.

제54조제3항제3호 중 “1.4미터 이상 1.5미터”를 “1.2미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 개정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제작 시점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5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운전자와 관제실간의 모든 통신장치는 비상시에도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⑤ 통신장치는 비상시 승객 및 운전자 또는 관제실과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제55조제2항 중 “아니하는 구조이어야”를 “않는 구조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구조이어야”를 “구조여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정지한”을 “정지하였을”로, 같은 조 제3항 “장애물등이”를 “장애물 등이”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강도”를 “세기”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강도”를 “세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하여”를 “설치해”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강도”를 “세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면”을 “앞면”으로 한다.

제60조 중 “하차시킬수 없다”를 “하차시켜서는 아니 된다“로, ”아니한다“를 ”아니 한다“로 한다.

제61조제1항 본문 중 “상시”를 “항상”으로,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여야”를 “연결되어 작동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

른”으로, “강도”를 “세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강도”를 “세기”로 한다.

제62조 중 “비상개방장치가”를 “비상개방장치를”로 한다.

제63조 중 “상시”를 “항상”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상시”를 “항상”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이상이어야”를 “이상이어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적정”을 “적당”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화재발생장소등을”을 “화재발생장소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살수용”을 “물 뿌림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곳에”를 “곳에서”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주야간”을 “제1항에 따라 표지판은 밤 낮”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축광위치표시”를 “축광식표시”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질환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제76조제1항제2호 중 “알콜”을 “알코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듣지 못

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듣지 못하는 자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못하는자”를 “못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쓸수 없는 자”를 “쓸 수 없는 자”로 하며, 같은 항 제7조 “인하여”를 “때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업무”를 “해당 업무”로 한다.

제78조제3항 중 “발생한”을 “발생하였을”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통제실장은”을 “관제책임자는”으로, “경우, 지체없이”를 “경우에는 지체 없이”로 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3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로 한다.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연도 시작전”을 “다음연도 시작 7일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0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상시”를 “항상”으로 한다.

제9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과”를 “호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준공검사일로부터”를 “준공검사날로부터”로, “정기검사일로부터”를 “정기검사날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이나, 만료 후 15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95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96조 중 “기타 법률에 의하여”를 “그 밖의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해당분야 종사자를 입회하게”를 “해당 분야 종사자를 참석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안전검사결과에 대하여”를 “안전검사결과를”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받”을 “통지받”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용하여”를 “운용해”로 한다.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사용 정지”를 “사용 중지”로 한다.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불능”을 “불가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당초”를 “원래”로 한다.

제104조제3항 중 “이에 대하여 검토 및”을 “이를 검토한 후”로 한다.

제10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하는등”을 “경우에는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하는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를 “통지”로 한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통보 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를 “제1항의 사고내용 등을”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당해”를 “그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0조제3항 중 “여부 등을 적정 판단하여”를 “여부 등을 판단하여”로 한다.

제111조 중 “단축하여”를 “줄여”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3조에 따라”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14조”를 “제109조”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6조 중 “제110조의제1항의”를 “제110조제1항의”로 하고, “자에 한”을 “자에 한정”으로 한다.

제118조 본문 중 “입회”를 “참석”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1조 중 “2012년 5월 31일”을 “2015년 5월 31일”로 한다.

부 칙<2009.6.4 제정>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지침의 폐지)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운영지침(항공안전본부훈령 제16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2.5.00 개정>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6. 시운전 다. 수동운전 중 “(3) 수동운전의 최고속도는 시속 8  
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될 것”을 “(3) 열차제어시스템 지시속도가  
없는 경우 시속 8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차체구조 및 차량실내·외설비의 화재안전 시험방법 및 기준

(제44조 관련)

구 분	산소지수	화염전파		연기밀도			연기독성	
시험방법	국제표준화기구 시험기준 ISO 4589-2 (한국산업규격 KS M ISO 4589-2)	국제표준화기구 시험기준 ISO 5658-2 (한국산업규격 KS F 2844)		미국재료시험협회 시험기준 ASTM E 662			영국 산업규격 BS 6853 첨부 B.2	
시험항목	산소지수 LOI	평균연소 지속열 Q <sub>asb</sub> (MJ/m <sup>2</sup> )	소화점 임계 열류량 CFE (kW/m <sup>2</sup> )	연기밀도 D <sub>s</sub> (1.5min)	연기밀도 D <sub>s</sub> (4min)	연기밀도 D <sub>s</sub> (10min)	독성지수 R	
내장판	≥40	≥1.5	≥20	≤50	≤100	≤200	≤1.6	
의 자	커버	28	-	-	100	200	-	2.0
	쿠션	28	-	-	100	175	-	3.2
	몸체	32	-	-	100	200	-	2.0
통로연결막	28	1.0	10	100	200	-	2.7	
바닥재	28	0.25	7	100	200	-	5.0	
단열재	35	-	-	-	100	-	1.6	
외장재	28	-	15	100	200	-	3.0	

<별지 제14호 서식>

제 호

## 자 격 인 증 서

## CERTIFICATE

자 동 여 객 수 송 시 설 관 제 자  
TRAFFIC CONTROLLER OF AUTOMATED PEOPLE Mover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사람은 국토해양부 훈령 제000호 제110조에서 정하는 자동여객수송시설의 관제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관제업무 수행에 적합한 유자격자임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